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4. 5. 16.(목) 배포 즉시

가칭「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」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5.16.(목) 이데일리, “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‘노동약자보호법’ 적용”

ㅇ 고용노동부는 노동약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특수형태근로 조사자, 플랫폼 종사자,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.

ㅇ 부당해고 금지, 법정근로시간, 연장·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.

2. 설명 내용

□ 가칭「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」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한 보호와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근로자 등에 대한 권익 향상 및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

ㅇ **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만을 위한 것은 아니며,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**

□ 향후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임

담당 부서	노동개혁정책관 미조직근로자지원TF	책임자	과 장	박은정 (044-202-7761)
		담당자	서기관	손우성 (044-202-776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